

발 간 등 루 번 호
11-1140100-000262-0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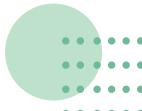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I

적용범위

1

I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15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16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62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74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85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99



III**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한·금지 행위 107**

- | | |
|---------------------------|-----|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108 |
| 2. 가족 채용 제한 | 124 |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41 |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의 금지 | 184 |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198 |

IV**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207****V****기타 225****VI****부록 239**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40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257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270 |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



적용범위

적용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1 ➤ 적용 대상기관

- 현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2 ➤ 적용 대상자

가.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나. 고위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함

다.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중앙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법),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인회계사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법),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법) 등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건축물 경관 심의(경관법),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 심의(감염병예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사감리자의 감리(건축법),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 등

● 공무수행사인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제14조의 행위기준이 준용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5

해석사례

Q

사립대학교에서 신교사 이전사업을 진행하는데, 신교사 이전 후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가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신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사립대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사립대학교 교직원 또는 사립대학교법인 소속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가 신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과의 차이

-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중 사립학교 법인과 민간 언론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 충돌방지법이 적용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공사의 임직원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중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까지 다음 반기 적용 단체를 고시함
※ 2025년 상반기(2025.1.1. ~ 6.30.) 적용 공직유관단체는 2024. 12. 31.까지 고시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지정 해제·변경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함

Q

별정우체국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후보자 3인 중 가족(자녀, 배우자, 친척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이 중 1명을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장은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 제10호)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감독기관 또는 별정우체국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별정우체국장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Q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농지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인인 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만약 농지위원회의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라면, 농지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요?

A

「농지법」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4조 등이 준용됩니다.

농지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농지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위원회 민간인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事實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인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농지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9조).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事實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

사립학교 부부교사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요?

A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되었던 ○○시 협치회의 위원이 해촉 후 ○○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치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시 협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최근 퇴직한 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한 결과 해촉된 협치회의 위원이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자로 참여하거나 연구참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공공기관A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관A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내부규정으로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른 ‘주관단체’는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주관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주관단체는 기관A의 내부규정인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거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여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장 및 통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인가요?

A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해당 자원봉사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자가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 축제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축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이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축제별 추진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축제 주관 및 전반적인 행사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A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이사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및 그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PART
I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했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 적용대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신고대상 직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 ◀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직무관련자

-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익 또는 불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함. 공직자의 해당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그 직무가 애초에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간접적·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님
-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④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리자 : 법인·단체의 영업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로서 임원에 준하는 직위를 의미함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수행 공직자가 재직했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 포함)를 법령(조례·규칙 포함)·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준 상대방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3 ◀ 신고·회피 방법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 신고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따른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4 ◀ 적용제외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민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인,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5 ◀ 신고·회피신청에 따른 조치

-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회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조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1. 신고대상 직무

Q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결재권자도 포함되나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시장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업무의 전결권이 담당국장에게 있는 경우, ○○시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①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②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의 상급자, ③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 보조금 지급의 전결권자는 담당국장이지만 담당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포함되므로, ○○시장이 시에서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수행 중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재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아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업무담당자가 조직원들의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 실무자로서의 직무만을 수행할 뿐 해당 평가위원회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사업무담당자는 자신이 포함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인사업무담당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자(직무관련자)가 본인(사적이해관계자)이라면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단순 취합하고 평가위원에 제출하는 등 해당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포함된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사 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가족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이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전보·상별·평가와 관련된 평가자·결정권자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행하는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 전반이 포함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공직자의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채용 등에 관련된 직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해당 공직자는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의 타 공공기관 재취업 승인과 관련하여, 직전 근무부서 직원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나요?

A

‘업무취급승인요청에 따른 의견서’가 업무취급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의견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업무취급승인을 위하여 단순히 지원하는 성격에 불과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의 신고대상직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B기관은 A부처의 외청입니다. A부처 장관은 일반적으로 B기관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부처 장관이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B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A부처 장관이 B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해당 조사의 범위·강도 및 조사 결과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부처 장관은 B기관의 조사 대상이 자신의 직계존비속임을 알게 되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1호의 ‘감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행위 등에 연루되어 조사기관(검찰, 경찰서, 상급감독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요?



동 조항의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포괄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보고로 인해 감사대상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조사·수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대상 직무가 아닙니다.

Q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나요?

A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중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역계약(자문요청 및 자문료 지급 등)에 관계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자라면 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자문요청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에서 퇴직하여 개인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법률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하여야 하나요?

A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Q

○○시의회 의원A는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B조합에 회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의원A가 B조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을 발의하고 소속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의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회의 이의유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

A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시작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는 의원의 사적이해 관계자입니다. 의원A가 조례안 심사·의결에 참여함으로써 B조합에 재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주게 된다면* B단체는 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의원A는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원의 조례안 심사와 B단체의 이익 또는 불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조례안의 발의나 본회의에서의 이의유무 표결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원A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본회의에서 이의유무를 표결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협력조약에 규정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등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인가요?

A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의 표시라고 할지라도 국제조사는 ‘조사’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직무에, 국제예비심사는 심사로서 같은 항 제1호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직무관련자

Q

○○시의회 의원A는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A가 소속 위원회에서 ○○시내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할 때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이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A가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대표자인 영농법인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의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예산안의 심사 결과와 이익·불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례 제정으로 인한 간접적·반사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인 ○○재단의 비상근이사A는 ○○재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입니다. A이사가 해당 보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공공기관이 소속 임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이사가 ○○재단에 대해 자신이나 자신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서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A이사가 법령·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팀장, 본부장 등 임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해당 임직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비상근임원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받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임원이 입찰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및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라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대방(직무관련자)이 본인(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해당 임원이 법령·기준에 따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라면 계약상대방(직무관련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방인 비상근임원이 해당 계약 업무담당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임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해당 임원이 공사입찰 수주 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단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부기관장이 A법인 대표자로 재직 중입니다.

○○공단이 A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는 어떤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자이며, 그가 재취업한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A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게도 이익·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부기관장이 A법인의 대표자이거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라면(직무관련자), ○○공단에서 A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담당자는 부기관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용역계약 체결과 관계되는 직무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A를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A는 자신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내용을 심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 시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법인의 임원 일부가 경쟁업체인 B법인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공직자C의 직무관련자는 A법인의 일부 임원들인가요, A법인인가요?



공직자 C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구한 자가 A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A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임원이 한 것이라면, 공직자C의 직무관련자는 조사·수사를 요구한 A법인 일부 임원 및 A법인으로 보이고, A법인이 공직자C의 사적이해관계자라면 C는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대리인)이 포함되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의 직무관련자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가 포함되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이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해당 직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직자A가 신고자B의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B가 공직자A의 조사 태도에 항의하며 직무유기 및 갑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A가 신고사건 관련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고자가 조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진정·민원 등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A 스스로가 해당 조사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A가 신고자B와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A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B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신고자B는 공직자 A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

Q

공공기관A 소속 공직자B가 공공기관C 소속 공직자D를 대상으로 부패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D가 공직자B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게 되었다면, 공직자B 및 공직자D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

공직자B와 D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조사, 수사 등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호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을 조사, 수사하는 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B와 D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B와 D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수사 대상은 직무담당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B와 D가 상호 조사·수사 과정에서 금전 등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직자에 대한 기관 교육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A기업이 선임한 세무대리인B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C와 이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C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세무대리인B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B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C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다면 B는 C의 사적이해관계자이므로 공무원C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B가 퇴직한 지 2년이 지났거나 C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더라도 C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B는 C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공무원C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는 B와의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B는 공무원C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C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C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적이해관계자

Q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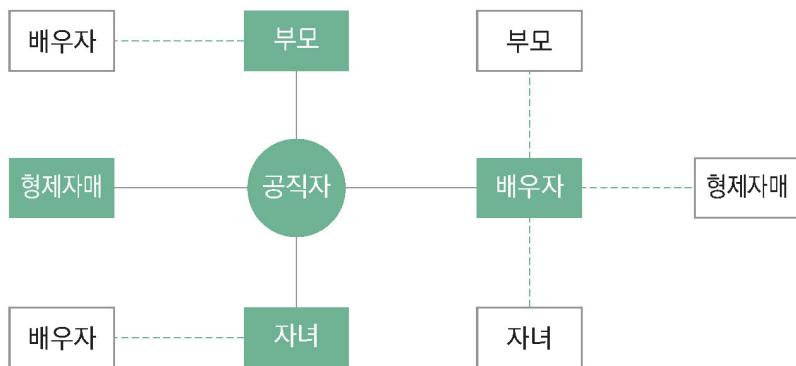
A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 때 ‘생계를 같이하는’의 의미는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가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그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이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Q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는 ○○구체육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보수는 수령하지 않습니다. 의원A는 ○○구에서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조례 등에 대해 심사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로 임명된 경위나 보수 수령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해당 지방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의원A의 배우자가 회장인 ○○구체육회는 의원A의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의원A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나 조례 제·개정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육회에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게 된다면 ○○구의회 의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산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의 심사를 통해 ○○구체육회에 이익·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구에서 근무한다면, 의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A

의원A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A의 배우자가 ○○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가 바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① 의원A의 배우자가 ○○구의 구청장 또는 관리자에 해당한다면 ○○구는 의원A의 사적 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나목)이므로 ○○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를 해야 합니다.(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구)
- ② 의원A의 배우자가 ○○구의 관리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구는 A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신고 및 회피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자(○○구) ≠ 사적이해관계자(배우자))
- ③ 다만 ②의 경우에도 자신의 배우자가 ○○구에서 해당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면 A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배우자)



Q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나목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자’는 어떤 직급을 말하나요? 민간기업의 과장이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나목의 ‘관리자’는 대표자, 임원, 사외이사 등에 준하는 직위로서,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직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

A재단법인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등재하였다면, ○○군이 A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군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군수가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A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대표자(이사장)로 재직 중이라면 A재단법인은 ○○군수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수는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A재단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6호)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고 A부처가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A부처 담당국장B가 ○○공사의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국장은 ○○공사에 대해 지도·감독·평가·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B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의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되었다면, B국장은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직무로서 해당 ○○공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국장이 ○○공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하더라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모회사인 ○○은행(공공기관)의 여신관리부장이 자회사의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은행 여신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채권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자회사가 참여한 경우, 여신관리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모회사인 ○○은행의 기준에 따라 자회사의 당연직 감사를 맡고 있다면 여신관리 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회사의 기준이 아닌 자회사의 정관 등에 의해 감사를 맡고 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최근 2년 이내에 ○○광역시에서 퇴직 후 ○○광역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A가 ○○광역시를 피신청기관으로 하는 고충 민원을 조사,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를 A위원이 임용·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으로 보아 A위원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고충민원의 피신청기관인 ○○광역시는 위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임용된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A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A

법 시행 이전에 재직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공직자가 A법인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하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에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A법인에 대해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공공기관에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동안 계속하여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단체에 대해서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A의 직원인 공직자B가 ○○부로 파견을 왔고, ○○부에서 공공기관A와 관련된 민원 조정 업무를 맡게 된 경우, 공직자B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A

공직자B가 현재 ○○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소속 기관은 공공기관A입니다. 즉 공공기관A는 공직자B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B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공직자B에게는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직 :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사례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여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는데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맞음
조합원·당원·학회 일반회원이었던 경우	아님
조합·정당·학회에서 보직을 맡은 경우	맞음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학원을 다닌 경우	아님
대학원에서 조교·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맞음



Q

○○도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A는 선출되기 전 2년 이내에 B언론사 대표를 지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B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B언론사는 의원A의 임기 시작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으로서 의원A의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의원A가 ○○도의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으로써 B언론사에 이익·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경우, 의원A는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의원A는 B언론사에 대해 이익·불이익을 주는 관련 감사에 대해서만 회피하면 될 것이고, B언론사와 무관한 다른 행정사무 감사에는 참여해도 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기관장이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는 본부·본사 및 그 소속기관·지사 등이 모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본부·본사로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본부·본사와 소속기관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 A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던 본부·본사와 소속기관·지사 등의 공직자라면 A에 대해 직무수행을 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A는 대부분의 임직원에게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신고 및 회피신청에 대한 조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퇴직자

퇴직자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A과 직원①을 지휘·감독하던 A과장	①의 사적이해관계자
A과 직원①과 과장②을 지휘·감독하던 상급 부서장 (국장, 부장, 본부장, 기관장 등)	①과 ②의 사적이해관계자
A과 직원①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은 B과장	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님
A과 직원①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②	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님

Q

1년 전에 퇴직한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를 교육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제한되는지요?

A

최근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동료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을 뿐 공직자A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이 퇴직자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료로 함께 재직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A가 퇴직한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A를 지휘·감독했다면 이 퇴직자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이 퇴직자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있다가 퇴직 전 몇 년 간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부서장이 아닌 상태로 근무했던 퇴직자에 대해서도 해야 하나요?

A

최근 2년 이내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자A를 지휘·감독하였던 자가 아니므로 이 퇴직자는 공직자 A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부서장이 아닌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나요?



A 퇴직공직자가 부서장은 아니나 팀장으로서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지휘·감독하였다면 퇴직공직자는 해당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판단 시, 같은 부서(과)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까지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실, 국, 본부에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기관별 직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공직자를 실·국·본부에서 법령·기준상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면평가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나요?



A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평가자가 상급자인 경우, 상급자가 다면평가로 인해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장을 해당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개최 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 후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A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의 형제자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후 다른 공직자가 계약업무를 담당한다면 해당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고 및 회피신청에 따른 조치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 직무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보고 등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회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감사담당 부서장의 배우자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감사로 인해 배우자가 이익·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날을 언제부터로 기산해야 할까요?



인허가 신청, 신고·고발의 접수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 개시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신청이나 신고·고발이 있음을 안 날부터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무 개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높다면 해당 업무 착수 시점부터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배우자에게 이익·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에 감사 항목이나 대상 공직자가 특정되는 등 배우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 A의 배우자인 공직자 B가 공직자 A와 면담 중 승진심사 준비 의사를 말하였고('24.11.6.), 다음날('24.11.7.) 공직자 A는 공직자 C에게 공직자 B의 승진심사 신청 의사를 알렸으며, 공직자 B는 승진심사 서류를 일주일 후 ('24.11.13.) 제출했습니다.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공직자 A가 최초 면담('24.11.6)에서 공직자 B의 승진심사 지원 의사를 알았다면, 공직자 A가 공직자 B의 승진심사 지원 의사를 실제로 안 날('24.11.6.)을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A

공공기관의 장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직계비속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A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 날이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공직자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내용을 몰라서 신고·회피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

공직자의 회피 의무는 어느 시점에 종결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A

공직자가 특정 직무수행에 대해 회피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최종적인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한 경우,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그 결과의 방향이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이 의무적(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또는 자발적(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된 언론 대응, 국회 자료 제출·보고 등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 소속기관장이 타 공직자를 직무 공동수행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공직자와 유사한 직급의 공직자 또는 하급자 중 어떤 직급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직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공직자와 공동 수행자 중 누구여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장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직무 공동 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수행 공직자와 공동수행자 사이의 역할 배분이나 최종 결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해당 직무의 특성과 사적이해관계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직무 공동수행자는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유사 직급의 다른 공직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는 공동수행자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사 직급의 공동수행자가 필요적으로 검토 또는 협조 결재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한 공직자가 최종 결재를 하더라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다.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치기한 7일은 공휴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지요?

A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기한 7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며, 조치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7일(화요일) 신고·회피가 접수되었다면, 12월 24일(화요일)에 조치기간이 만료됩니다. 12월 18일(수요일) 신고·회피가 접수되었다면 12월 25일(수요일)에 조치기간이 만료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일자는 공휴일이므로 12월 26일(목요일)에 만료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민법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Q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무가 종결된 경우, 그래도 신고·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해당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수행이 종결되었다면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해당 공직자는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은 소속기관장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직무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이 7일 이내에 법 제7조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Q

공공기관인 ○○재단에서 언론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임원A는 재단에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언론사 B일보에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B일보가 ○○재단 언론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임원A는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 B일보에 대한 평가에서만 배제되나요, 전체 선정심사에서 배제되나요?

A

B일보는 임원A의 사적이해관계자이므로, B일보에 대한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직무수행에 대해 회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심사가 심사대상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한정된 수의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B일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사업 참여자 심사 전반에 대해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서만 회피하면 되나요, 아니면 면접 전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해당 면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평가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면접 평가로 인해 사적이해 관계자에게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면접 전체에 대해 회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대한 조치의 예외사유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법 제7조제2항제1호)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는 해당 직무가 특수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거나 그 직위에 특수하게 주어지는 결재 권한, 정보 취급 권한 등으로 인해 다른 공직자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무의 특성이나 요구되는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컨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진단, 감정, 시험, 심판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정보나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취급의 문제가 있는 감사, 조사, 인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기관 내에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나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경우 '확인·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A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수행한 직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점검'의 의미는 해당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대상 직무의 유형, 사적이해관계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무 수행의 근거 법령·기준에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사적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한 이익·불이익 등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대상이나, 공공기관의 법령·기준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다른 법령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때 조치 결과 통보도 생략할 수 있는지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와 달리 공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신속히 판단해, 공직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부부가 각각 인사팀장과 감사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인사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관 규모가 크지 않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배우자에 대해 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감사·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인사, 감사 직무에 대하여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든 인사, 감사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규모가 작아 배우자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 매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다면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사정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 감사 관련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치와 관련하여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기관장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공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을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 등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운영원칙 등을 정한 법령·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Q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누구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근 상급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직근 상급자는 조치와 관련하여 기관장 등의 의견을 들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직근 상급자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을 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정」 등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운영원칙 등을 정한 법령·기준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2-4호) :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향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를 부담

2 ➤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

*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 신고방법

● 신고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4 ▶ 신고에 따른 조치

- ◉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5 ▶ 위반 시 제재

- ◉ 징계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Q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공직자윤리법」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은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 취급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시점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소속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상속·증여
등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보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37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 업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의 소지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직자가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 날’은 언제부터 기산하면 될까요?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이란 공직자가 본인, 가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소속 공직자는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관 내부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에 부동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휴직 등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은 내부 게시판에 ○○도청 도시개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했으니 해당 사업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도청 공직자A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공직자A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가 발생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공직자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공직자A는 ○○도청에서 내부 게시판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몰랐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A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 시행자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의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공직자 본인, 가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 하였음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

○○부처의 소속기관 중 일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처 소속 전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집행기관으로 해석됩니다. 즉, 각 소속기관 및 집행기관별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의 소속기관A에서만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소속기관 공직자만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보건·시설물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속기관·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무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때,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로 파견 간 공무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로 파견 간 공무원은 지방의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로 파견 간 공무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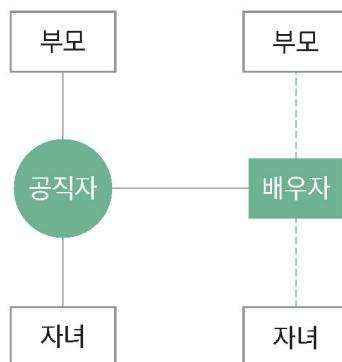
○○군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고시를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군 소속 공직자A의 어머니가 해당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어머니가 공직자A와 생계를 같이한다면 공직자A는 어머니가 해당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게시판에 사업 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Q

○○항만공사에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실시했고, 소속직원A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직원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항만공사에서 실시한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 주변 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공사 소속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해당 부지를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부지 개발 공사를 완료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공사에서 수행한 개발 업무에 따른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지해야 하는지요?

A

지구지정 후 보상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아야 할 실익이 소멸되는 시간은 개발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정보를 공지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무의 절차적 특성, 부동산 개발 업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직자들이 부동산 사업 정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 동안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사업의 지정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2년 내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보상 시행 후에는 토지를 매수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보상 시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0년 넘게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2년,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 중인 직무 관련 부동산도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인지요? 지번·사업 일정 등 기준 공개내용이 변경되어 변경 고시 등을 통해 추가로 대외 공개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인 '22. 5. 19. 이후에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유·매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 대상 지구(대상 지번)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획변경으로 개발대상 지구가 변경되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당초 고시된 대상지구(지번) 외에 새로 대상지구가 추가되는 내용의 계획 변경이 있어 고시되는 경우를 의미

당초 대상지구	변경 대상지구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지번1+지번2	지번1+지번2 (측량으로 면적 변화)	아님
지번1+지번2+지번3	지번1+지번2 (대상지번 감소)	아님
지번1+지번2	지번1+지번2+지번3 (대상지번 추가)	신고 대상임
지번1+지번2+지번3	지번1+지번2+지번4 (대상지번 변경)	신고 대상임

Q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을 도과해서 한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의심될 시 신고·고발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각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37개 업무를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모두 지정해야 하나요?

A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은 기관에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아야 할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직자들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에서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해당 개발업무의 사업정보를 내부에 공지하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접수받아 관리·조치하며, 해당 업무를 적정한 시점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1 ▶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을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

2 ▶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 신고방법

- 임용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4 ▶ 제출내역 공개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 할 수 있음

5 ▶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입니까?

A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로서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 경찰청장
9.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1. 3부터 6까지, 8~10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다만, 4, 5 및 8, 10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12.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14. 대통령경호처 차장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6.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Q

임용 또는 임기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부문의 법인·단체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민간부문에서의 겸직이나 고문·자문 등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있다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재직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단체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공기관으로 보아 내역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의 민간부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 기관을 제외한 부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운영비를 지원받은 법인·단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단체에서의 재직 사항, 대리·고문·자문 내용,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자문한 건이 많은데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이나 개인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

-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품종임
-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 고문·자문

- 고문 :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활동
- 자문 :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
-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 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 제출 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출 대상 여부
정당 △△위원장, □□협의회장 등 직위를 받아 활동한 경우	제출
정당원으로 활동	미제출
○○포럼 회장으로 재직	제출
이장, 통장으로 활동	미제출
임대사업 내역	제출
이상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을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제출

Q

공직유관단체A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인 B지방자치단체의 장 C가 공직유관단체A의 기관장을 겸직하고 있다면, A에서도 기관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야 하나요?

A

C는 B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이고, 공직유관단체A의 고위공직자는 아니므로 C는 A기관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 내에서 승진임용되었거나 전보, 파견 후 복직 등으로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A

최초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시점에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또는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새로운 직위에 임용되기 전까지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내역이 있었다면, 새로운 직위에 임용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위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새로운 직위에 임용된 후 자체 점검을 해 보았을 때, 최초 고위 공직자로 임용된 시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 최초에 제출한 사항으로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의무 판단

- 고위공직자A가 ○○실장으로 임용되고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한 뒤 1년 후 △△실장으로 임용된 경우 1년 동안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장 임용 시 제출한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B가 ○○국장으로 임용되고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고, 2년 후 △△ 실장으로 임용되었는데, △△실장 임용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음. △△실장 임용 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 고위공직자C가 ○○부 실장으로 임용되고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한 뒤 2년 후 ○○부 차관으로 임용되었는데, 차관 임용 1년 전부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었던 경우. ○○부 차관 임용 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함

Q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시의회는 의원의 임기 시작시 겸직신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요?

A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고위공직자가 실명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A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시 실명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동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Q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반드시 청렴포털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아 기록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청렴포털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6조).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②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
-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 신고방법

- 거래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4 ➤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의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대상인 직무관련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등 같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직무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라면 거래 신고 대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병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는 아니지만, 의사의 치료는 환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이므로 거래 신고 대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얼마 이상 차용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요?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직무관련자가 되기 전에 빌린 돈을 갚아 금전차용 관계가 사라진 것이 아닌 이상, 공직자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 대상 금전거래의 금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자의 지급 여부와 차용증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과장A가 지휘·감독하는 직원인 B에게서 돈을 빌릴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직원B는 자신을 지휘·감독·평가하는 과장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이므로 과장A는 직원B와 금전거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 산하 사업장에서 사무실 유지 및 시설 보수 등을 위해 소액의 물품을 계약서 작성 없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면 해당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인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계약 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 또는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치르거나 문구점에서 문구를 구매하는 행위 등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Q

공직자A가 지인B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공직자A는 면허·특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인이 관련 면허를 신청하러 왔다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돈을 빌리고 난 이후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면 금전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인이 직무관련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인B에 대해 최근 2년간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라면 지인B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지인B가 직무관련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Q

○○시문화재단은 ○○시의회 의원A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시문화재단 대표와 의원A의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A

○○시문화재단 대표는 ○○시의회 의원A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이므로 의원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의원A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인 ○○시문화재단 대표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게 된 경우 의원A는 ○○시의회 의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국공립학교 교사A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교사A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라면 해당 교사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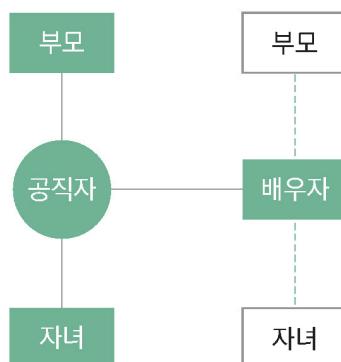
A

미성년자의 학부모는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깊이 관여 하므로, 미성년자의 학부모는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A는 직무관련자인 학부모와 자신의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Q

공공기관인 ○○조합 소속 인사팀장A와 다른 부서 직원B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사팀장A의 부모가 직원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인사팀장A가 직원B를 포함한 ○○조합 소속 공직자에 대한 승진·전보·상별·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원B는 팀장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의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이해충돌방지법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사팀장A는 자신의 부모가 직무관련자인 직원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Q

○○시의회 의원A의 부모님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B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2022.1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가 되었을 때 계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A는 자신의 부모님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단체B가 의회에서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면, 의원A는 단체B와 부모님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원A가 신고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평판조사를 실시하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간 금전거래 시 이해충돌방지법 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A

금전거래의 당사자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승진대상자인 공직자에 대한 평판조사가 단순 확인 등의 목적에 불과하다면 해당 공직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당사자 간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공기관은 △△지역 개발사업을 승인,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A, B, C는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발행한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임직원A는 개발사업 승인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임직원B는 해당 승인 업무와 관련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며, 임직원C는 개발업무가 진행됨을 알고는 있지만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임직원은 누구누구인가요?

A

□□법인의 △△지역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A와 승인 관련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B의 직무 수행으로 □□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인은 A와 B의 직무관련자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법인의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는 금융상품의 매매 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A와 B가 직무관련자인 □□법인이 발행한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였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과의 공모형 펀드 거래가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에 해당하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에 해당 한다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해충돌 방지법 제9호제1항제3호 단서).

임직원C가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됨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C의 직무관련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직원C는 법인B의 공모형 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인중개사인 ○○구의회 의원A가 ○○구 구청장B의 부동산 거래를 증가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구청장B가 사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구의회 의원A가 구청장의 부동산 거래를 증가 한다면, 의원A와 구청장B는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구의회 의원과 구청장이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B는 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의원A는 구청장B와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구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A의 신고를 접수한 ○○구의회 의장은 의원A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 구청장과의 거래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A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인의 주식, 지분 등 소유 비율 확인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출자자 명부, 사원명부, 자본금 납입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사업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과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주식회사)
 2.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주식·지분으로 파악되지 않고 자본금 비율로만 파악되는 단체 또는 주식·지분 비율과 자본금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참고 기준으로 활용)



Q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A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치르거나, 문구점에서 문구를 구매하는 행위 등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물품 구매 등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이거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이 때의 '직무'는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하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신고대상 직무를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 것과 다름

2 ◀ 의무내용

- 공직자는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 신고방법

- 신고인과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유형·사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사전 신고가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4 ▶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석사례

Q

○○시 도시개발과장A는 1년 전 ○○시를 퇴직한 B와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치던 중 B가 최근 ○○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토지개발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과장은 B와 골프를 친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A

과장A가 B와 골프를 치는 시점에 B가 이미 직무관련자였다면 과장A는 골프를 치기 전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장A가 연가, 휴직 기타 업무수행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B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장A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중앙부처 국장A는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한 B와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B가 대표인 법인C에서 신청한 특허에 대해 A의 국에서 심사 중이라면 국장A는 B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A

퇴직자B 및 법인C는 국장A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에 해당하므로 국장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국장A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골프를 치기 전까지 B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B는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 6개월 전 퇴직해 국장A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 국장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장A는 B 또는 법인C가 특허를 신청한 사실을 보고를 받는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하는 ‘골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 실내 골프연습장에 함께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은 사적 접촉 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여행에 등산이 포함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적 접촉의 행위 중 하나인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에 서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입니다.

Q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중앙행정기관 ○○청의 소속기관인 A지방청에서 1년 전 퇴직한 직무관련자가 B지방청 소속 현직 공무원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B지방청 공무원은 사적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A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입니다. 즉 A지방청 공무원과 B지방청 공무원의 소속 기관은 각 지방청이자 ○○청입니다. 따라서 ○○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B지방청 소속 공무원은 1년 전 A지방청에서 퇴직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게 될 경우 ○○청장에게 사적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 직원A가 약 50여 명이 참가하는 골프대회에 등록하였는데, 같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B도 참가하게 된 경우 직원A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B가 직원A의 직무관련자라면, A는 B와 골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B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B도 골프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다른 조에서 경기한 경우로서 A와 B가 골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접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A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입니다.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적접촉을 신고하는 경우 접촉 일시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나 접촉 시기 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적접촉을 신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접촉여부나 접촉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접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최근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B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관리하는 ○○공공기관 담당부서장A는 B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용역이 종료된 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검수 및 연구비 정산 등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B는 더 이상 A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사적 접촉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후 신고를 접수한 공공기관의장 등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I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의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PART
III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 제한 내용

● 제한 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 공직자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다른 직위
 -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 허가 절차

- 직무와 관련한 일부 외부활동^{*}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 * 법 제10조 제2호, 제4호, 제5호
-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허가 신청
 - ※ 소속기관장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청
 - ※ 단,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 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부 공공기관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음(운영지침 제9조제1항 각 호)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 소속기관장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

3 ▶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석사례

- (제1호)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Q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인 직무관련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A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등 같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는 직무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라면 동 조항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Q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나요?

A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의해 제한됩니다.

Q

공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보고·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가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요청을 받아 보고·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제한되는 외부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의회 의원A가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지요?

A

○○시는 ○○시의회 의원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따라서 의원A가 ○○시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노무 또는 자문·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Q

○○부 개발과장A는 개발분야의 전문가입니다. B협회는 과장A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개발안건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의뢰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가액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장A는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A

과장A가 B협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위원으로서 ○○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B협회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B협회가 과장A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협회를 대상으로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장A는 B협회에 개발안건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Q

공직자A가 개인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기관B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인증기관B가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인증기관B가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라면 A는 인증기관B가 실시하는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하여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A가 직무 관련자인 인증기관B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2호)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Q

○○문화재단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속 직원A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관련분야 특강을 맡기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단 비상임이사B도 전문분야가 있어 관련 축제나 문화강좌에 참여하도록 한 후 출연료나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A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직원A나 비상임이사B가 개인의 자격증 등을 근거로 강의 등을 진행할 때, 재단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직자가 타기관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사례금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요?

A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가 포함된 원고를 타기관에 작성해주고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원고를 작성해주는 행위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거나, 소관 직무와 무관한 원고를 작성하였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외부강의등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공청회·간담회 등의 좌장,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잡지에의 기고 등이 포함됩니다.

①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공직자A는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외부강의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강의료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소속 공공기관 장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위반입니다.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수수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별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서면 자문 등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므로,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Q

○○부 공무원A는 ○○부 직무와 관련된 교재 등 저술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를 받아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A는 이 도서를 활용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도서 출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게시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A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공무원A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작 목적, 경위 등을 비롯해 기존에 저술활동과 관련해 허가받은 겸직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A가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 하였는데, 원장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서적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받지 않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

연구위원A는 ○○연구원 소속으로 직무로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것은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연구원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아직 대가를 수령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적 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Q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의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해당 공직자가 그 연구용역 수행에 참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타부서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일지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될 것이므로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겸직 허가 내용에 연구용역 수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제1항을 통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였는데,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 일반 행정 직원도 해당 별도의 절차를 거쳐도 되는 것인가요?

A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일반 행정 직원이 학술·연구 활동이 아닌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은 학술·연구활동으로서의 외부활동의 경우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A

교육청은 현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열거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상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5호)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제한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의 겸직금지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겸직금지 규정과는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서의 '직무'가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인가요? 직무와 관련된 직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고자 하는 공직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됩니다.

공직자가 취임하고자 하는 다른 직위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공직자의 담당직무의 특성과 다른 직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소속 공공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 비서실장이 ○○구청에 임용되기 이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요?



'취임'이란 해당 직위에 새롭게 임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서실장이 ○○구청에 임용되기 이전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취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의 ‘직위’에 심사, 의결 또는 자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위원회가 포함되나요? 이러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취임’으로 볼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공직자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와 관련된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하고,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인·단체 소속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단체(들)가 구성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거나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가 아닌 한, 공직자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Q

직무와 관련된 직위에 취임하고자 하나, 해당 직위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허가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직무와 관련된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되므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는 해당 직위에 취임하기 전까지 받아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참고).

소속기관장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Q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전공 관련 학회의 장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A

해당 학회가 교수의 연구, 교육, 기타 학술행위 등과 관계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거나 소속 국공립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학회장 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소속 국공립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경우에는 학회장 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Q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가 기관장 본인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소속기관장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허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기관장이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게 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군의회 의원이 타 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합장 겸직 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될까요?

A

○○군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의 B조합장 직위에 취임할 경우, B조합이 ○○군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면 B조합장에 취임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B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의회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B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나,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군의회 의장의 허가가 있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타 기관의 직위 공모에 지원할 때 소속 기관장이 확인 및 날인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허가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A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및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을 통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 허가 시기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허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나, 사후 통보 형식은 허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겸직 허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겸직 허가를 받은 내용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입니다.

Q

수능 출제 위원에 위촉되는 등 대외비 사안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종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둑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 ► 제한내용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 적용 제외 사유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법 제11조제2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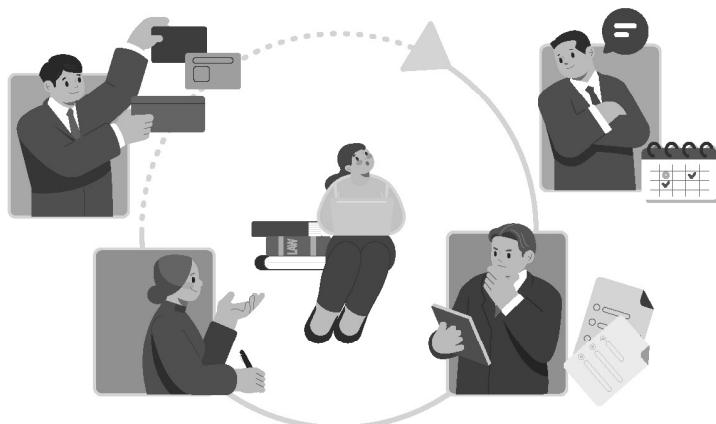
3 ➤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로부터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4 ➤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석사례

1. 가족채용 제한이 적용되는 채용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법령이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경쟁채용의 방법으로 공직자를 채용합니다. 비경쟁 채용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따르지 않은 채용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추천이나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일부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은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 공공기관·공직유관 단체의 경우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가족채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채용 제한 대상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최종 채용단계 이전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명시한 ‘다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훈령과 예규가 포함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는 조례·규칙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훈령과 예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훈령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을 하더라도 해당 채용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을 적용받으므로 공공기관은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A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면접 등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도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비경쟁채용으로 채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채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무원·비공무원,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이나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자녀 등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일일대체 또는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는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각급 국공립학교에서 봉사를 위촉하여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방역 활동 등을 하게 하고, 소정의 봉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봉사를 위촉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의 봉사 수당을 지급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나요?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업무 담당자는 인력풀에서 선발된 채용 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가족을 주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자원봉사자 위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용의 형태일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이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원봉사자 위촉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자원봉사자 위촉 및 수당지급 담당자(결재권자 포함)의 가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Q

학교 공무직 채용 담당자가 두 차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본인의 가족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라면 학교 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의 상대방(직무관련자)이 자신의 가족(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일부 경쟁채용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차례 채용 공고에 대해 지원자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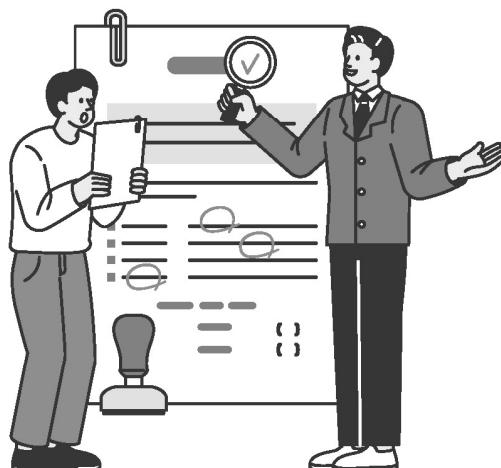
Q

○○군의 채용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경쟁채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1인 채용에 채용담당자의 가족 1인만이 원서를 접수하여 면접 등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공개채용절차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족 채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례 등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일부 경쟁채용의 요소를 도입했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경쟁채용시험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지원자가 1인뿐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2. 가족채용 제한 대상

Q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산하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이지만,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A

산하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로 정의한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이지만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A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그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채용 건의 실무자와 그를 지휘·감독하는 팀장, 부서장, 국장, 본부장, 기관장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인사팀 외의 다른 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됩니다.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채용 건에 대하여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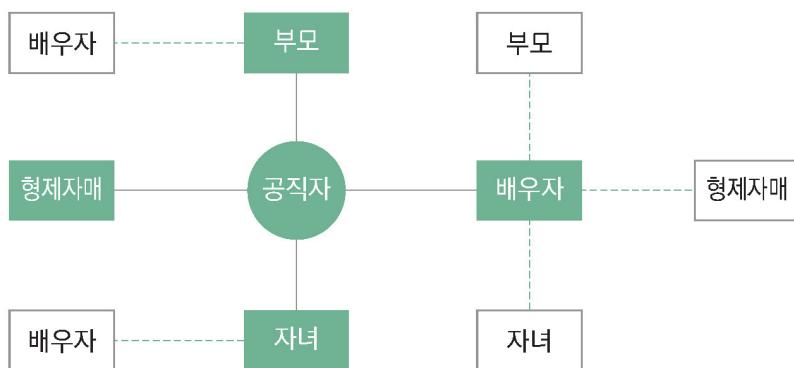
매형이 공공기관A의 인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공기관A에 채용될 수 없는 것인지요?

A

공공기관A의 인사위원회가 채용에 관계되는 심사·평가 등을 수행한다면 인사위원인 매형은(공직자B) 공공기관A의 채용업무 담당자입니다. 공공기관A는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나, 법령·규정 등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때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B의 처남이 B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의 채용을 통하지 않고는 공공기관A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Q

○○공사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B부서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현재 진행하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A부서에서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B부서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문화재단은 ○○광역시에서 출연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광역시 부시장 A는 ○○문화재단의 계약직 사내 변호사를 비경쟁 채용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했음을 재단 이사장에게 넘지시 알렸습니다.

A

○○광역시 산하공공기관 ○○문화재단은 감독기관인 ○○광역시 고위공직자인 부시장 A의 가족을 비경쟁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한 부시장A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징계 및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립 ○○대학교에서 소속 교수A의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대학교 소속 교수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채용되는 것이 제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A가 ○○대학교의 고위공직자 또는 해당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경우, 비경쟁 채용으로 교수A의 배우자를 채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5조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Q

공직유관단체인 ○○공단에서 비상임이사의 자녀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저촉되는지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근거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이 제한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동조항 제1호의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해당 채용업무를 담당(결재포함) 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비상임이사의 자녀를 채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도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도의원의 자녀를 채용할 수 있나요?

A

○○도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르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한다면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조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청의 가족채용 제한 대상에 의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구의회 의원A가 ○○구의회에서 자신의 가족을 비경쟁 채용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의원A의 가족이 채용되었습니다. ○○구의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채용된 의원A의 가족을 해고하여야 하는지요?

A

○○구의회의 고위공직자인 의원A는 자신의 가족이 비경쟁채용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구의회는 의원A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채용대상자의 해고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국공립학교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는데, 제한 대상의 범위가 학교장 소속 학교(A),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 소속 시도교육청 관내, 전국 중 어디까지인가요? 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공립학교A의 장은 A학교의 고위공직자는 아니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므로 A학교는 교장의 가족을 경쟁절차 없이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A학교의 장은 다른 학교의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또는 각 학교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학교 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교에 채용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라면 교장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장은 A학교의 채용업무 담당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채용대상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족)에 해당 하므로, 교장은 해당 채용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탁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의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이 포함되나요?

A

○○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님)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포함) 등에 해당한다면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소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센터장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협력단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는 제11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의 가족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채용 등의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 사인은 채용대상자(직무관련자)가 가족(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대상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나요? 채용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는 받을 수 없는지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는 시점은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채용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채용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습니다. 처음 가족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한 이후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시점까지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 담당자에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처음 채용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 이전이라는 등으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기간 연장 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채용 제한 대상자인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Q

○○공사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임직원의 가족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임직원이나 임직원의 가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동의나 제출을 권장 또는 강제할 수 있을까요?

A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권장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둑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1 ▶ 제한내용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 온라인 상의 물품 구매, 해외구매, 식당에서의 음식물 구매, 연구·강의·자문 등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행위 등을 포함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계약부서)를 통한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업부서)에서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적용을 받음

● 공공기관(산하공공기관, 자회사 포함)은 다음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 :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
 -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
-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 ⑧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⑨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 ➤ 예외적 허용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 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획층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확인해야 함

※ 공공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계약담당 공직자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의 확인서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4 ▶ 위반 시 제재

- 수의계약 채용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무엇이 수의계약인가요?

A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업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행위

- 소액의 물품 구매
-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체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 자문위원·심의위원·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강사 위촉
- 협회, 학회 등 회원 가입비 지출
- 회비 등을 금융기관에 위치하는 행위
- 회의실을 대관하는 행위
- 해외구매

●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 보조금, 장려금, 후원금, 기부금 등의 지급

Q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의 형식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체결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계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등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견적을 제출한 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의 하나일 뿐이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0조에 의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Q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요?

A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나라장터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관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요?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공급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입찰의 방법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고,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사를 위촉한다면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빈번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지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의계약의 규모나 계약체결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지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지원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 건별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보이며, 해당 위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속기관 소관 법률안 입안 또는 행정입법 분석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등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대리점이 아닌 원제작사가 포함되나요?

A

법 제정 취지와 규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소속 고위공직자

Q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것이 영리업무금지에 위반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직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Q

○○구 구청장A가 취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관내 자동차 공업사를 자신의 형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만 양도하고 실제 운영은 여전히 구청장A가 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인은 구청장A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는 해당 공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나요?

A

만약 해당 공업사가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구청장A가 운영하고 있다면, ○○구가 해당 공업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장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공업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공업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공업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

지방의회의원이 동료 의원과 함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나요?

A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업체에서 의회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지방의회의원의 자녀가 운영 중인 언론사에 해당 의회 개원 관련 흥보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소속 고위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언론사와의 광고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면 제한될 것입니다.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대상 중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는 해당 계약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와 결재 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해당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그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인 과장·국장·실장 등과 기관장이 모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와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모두 포함 합니다.

Q

공직자A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A의 가족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제한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서의 수의계약을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A의 가족은 ○○부서의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이 제한되지만, △△부서의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관계가 아니라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시 △△부서에서 관서운영경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특근매식비, 숙박비, 물품 구매 등)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업체(식당, 숙박업소, 물품 판매자 등)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이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A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B 중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A

공공기관에서 카드결제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관서운영경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출납공무원은 지출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이고, 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계약의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출납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만 담당할 뿐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는 계약의 사실상 담당자인 카드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Q

○○문화관광재단의 이사는 예·결산, 사업계획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가 관내 광고업체 대표의 직계비속인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나요?

A

해당 이사가 직계존속이 대표인 광고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를 지휘·감독한다면 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이사가 계약 담당자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계약과 관계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직무관련자)가 본인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인 ○○대학교병원 의사A가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 구매를 요청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의사A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표자인 법인·단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상 문제가 될까요?

A

의사A는 구매 품목과 수량, 판매자 등을 결정하여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수의계약을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병원이 의사A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표자인 법인·단체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지시·유도한 의사 A와, 해당 업체가 의사A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표자인 법인·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구매한 계약업무 담당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 및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관 사업과 관련된 학술용역을 발주하면서 운영위원회 민간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될까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입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이 운영위원회 민간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계약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면 그 직무관련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다목)인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계되는 직무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 정관상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A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까요?

A

공공기관이 자문을 의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A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문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이 비상임이사A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비상임이사A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문화재단에서 극장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직자A는 공연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지만, 주 1~2회 출근하면서 공연 진행 사항을 점검·관리할 뿐 결재 권한은 없습니다. 관련 행정적인 업무는 담당 부서의 직원과 부서장이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합니다. 공직자A의 배우자는 B극단 대표라면, ○○문화재단은 B극단과 계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공직자A는 ○○문화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공직자A가 공연을 수행할 극단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극단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재단은 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B극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

○○협회의 비상근 부회장(A)는 민간단체인 △△학회의 회장으로도 재직중입니다. ○○협회가 2023년도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연구용역 중 2건은 △△학회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한 건은 △△학회 단독입찰로 선정되었습니다. 부회장A가 △△학회에서 해당 연구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경쟁입찰로 발주한 계약이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회장A가 해당 계약의 법령상·사실상 담당자(결재권자 포함)인 경우, ○○협회는 부회장A가 학회장인 △△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쟁입찰로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부회장A가 해당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결재)하는 공직자인 경우,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이 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회가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부회장A가 참여하여 수당을 받는 것은 △△학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회장A가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회장A는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학회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수의계약을 담당하던 공직자A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법령상·사실상 담당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공직자A의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요?

A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수의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A의 가족이 라면 해당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체결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A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감독기관·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Q

○○공사의 자회사 △△시설관리에서 계약을 발주해 ○○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자인 법인'에 해당해 △△시설 관리는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건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취지는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 고위공직자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자인 법인에 모회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모회사인 ○○공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이 아닌 자회사도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요?
자회사의 자회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자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회사에도 적용이 되며, 모회사 및 자회사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 역시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회사인 공공기관A의 자회사B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회사 C는 공공기관 A의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Q

국회의원A가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B가 의원A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공공기관B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개정될 예정





○○시의 행정구역은 △△도에 속합니다. ○○시가 △△도의회 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동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위탁한 사무 중 광역의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기초의회가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시 의회 의원이므로 ○○시가 △△도의회 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자치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Q

○○도시공사는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사업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공사의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한되나요? 만약 제한된다면 의회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

○○도시공사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대상 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를 감사·조사하는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Q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 건설협회B를 대상으로 건설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협회B는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C가 발주하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지요?

A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C는 이들 기관을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구의회 의원 및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건설협회B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와 거래하는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 C가 건설협회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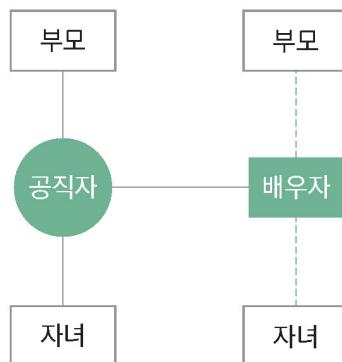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인가요?

A

○○시는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Q

○○문화재단 공연기획부에서 새 공연프로그램의 반주자를 섭외중입니다. 재단에서는 공연기획부 부장A의 배우자B를 반주자로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A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면,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A가 공연기획부장으로서 반주자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배우자B와의 계약체결을 결재한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 규정을 모두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B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며, A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Q

○○시청 본청의 공직자A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업무와 계약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직자A의 배우자B는 ○○시에서 인쇄물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 본청과 모든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은 배우자B의 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시청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인쇄물 제작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업무를 본청 소속의 공직자A가 법령상·사실상 담당한다면, 공직자A의 배우자B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집행기관에 수의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가 따로 있다면 해당 집행기관은 B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부서장A의 형제B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공사는 △△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직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용역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부서장A의 형제가 대표자인 법인·단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장A는 해당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A는 냉난방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의 배우자B가 ○○군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면, A의 업체는 ○○군의회의 감사·조사 대상인 ○○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나요? 2022.5.19. 이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지방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A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A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이해충돌방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2022.5.19.)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수의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새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Q

공립○○초등학교는 수년 전부터 교장A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교장A의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B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요?

A

공립○○초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장의 직계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B가 교장A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또는 B가 ○○초등학교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시 △△면사무소가 ○○시의원의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가 ○○시의회 의원의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Q

민간단체인 △△협회는 협회 정관에 의해 ○○도의 도지사를 협회장으로 추대해 왔습니다. ○○도는 △△협회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A

△△협회는 ○○도의 고위공직자인 도지사가 대표자인 단체에 해당하므로, ○○도는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임에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 그 외의 사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Q

공공기관인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A의 자녀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학교병원은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의사A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제한되는지요?

A

공공기관은 해당 수의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A가 특정 의료기기를 구매해 줄 것을 병원의 계약담당부서에 요구하는 등 해당 수의계약의 발주·체결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다면 의사A를 해당 수의계약의 사실상 담당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교병원은 △△주식회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사A가 ○○대학교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사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A의 자녀가 대표자라는 이유로 △△주식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고위공직자 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는 법 제정 취지와 규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또는 단체의 형식적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법인·단체의 명목 상 대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사실상 소유·운영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 계약 상대방에 대한 판단 예시

- ① 지방자치단체가 A업체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업체가 물품을 공급하고 A업체가 계약대금을 B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B업체가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임
 ⇒ B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판단
- ② 공공기관이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위탁하면서 C매체사를 지정하는 경우, 광고계약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C매체사임
 ⇒ C매체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판단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이후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D의 대표자를 동생으로 변경하였으나 의원이 여전히 법인D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익 배분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D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광역시 부시장에 취임한 A의 배우자는 지역 언론사B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B언론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인 ○○광역시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은 A부시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B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Q

공공기관에서 소속 고위공직자A의 지시·유도에 따라 고위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는데, 명시적인 계약(세금계산서 발급)은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고위공직자A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계약의 ‘명의자’로 한정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가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정 취지 및 규율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계약 물품을 공급한 실질적 공급자를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이 실질적 공급자이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므로, 고위공직자A가 해당 수의계약을 지시·유도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시 출연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서 ○○시의원에게 영상 출연의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A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시 출연기관이 ○○시의원과 영상 출연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극장(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협업 예정인 민간제작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해당 제작사와 공동제작 공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나요?

A

비상임이사가 소속 고위공직자 및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자 포함)가 아니고,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의계약 체결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비상임이사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 계약과 관련하여 의결 또는 심사에 참여하는 등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등의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직무관련자)가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등(사적이해관계자)이라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

○○시체육회가 이사회비, 종목단체회비 등을 A은행에서 ○○시체육회장이 대표자인 B은행으로 이전 사용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시체육회가 이사회비, 종목단체회비 등을 이전하는 것이 ○○시체육회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은행을 B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수의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체육회는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자 포함)인 ○○시체육회장이 대표자에 해당하는 B은행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수관계사업자



특수관계사업자가 무엇인가요? 특정 법인·단체가 공직자 등의 특수관계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야 합니까?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개인의 주식, 지분 등 소유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단체의 주주명부, 출자자 명부, 사원 명부, 자본금 납입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의 자녀가 △△건설(주)의 주식을 33.33%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이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출자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단체(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건설(주)는 ○○군 고위공직자인 군수 및 그 자녀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이므로 ○○군은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

○○도의회 의원A의 배우자, 자녀가 △△건설회사의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도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대표는 의원A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도 또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A

△△건설회사가 의원A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의원A와 그 가족이 △△건설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건설회사는 의원A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여 ○○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은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지방의회 A의원이 ○○법인에 대해 자본금을 100% 소유하였으나, 금융기관과 ○○법인 주식 전량에 대해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 A의원이 ○○법인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A의원이 ○○법인의 자본금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그와 별개로 A의원이 주식 전량에 대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매각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법인은 A의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원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지자체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 제외 사유

Q

○○군 A부서에서 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일식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청 인근의 일식당은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하는 식당이 유일합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제외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해당 계약상대방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2호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주관적인 품질의 차이나 제품에 대한 선호도, 거래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군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Q

국공립학교에서 교구 구입 등을 위해 주거래 업체와 빈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A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매 계약시마다 확인서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상황과 비교해 수의계약 상대방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 되거나 공공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의 범위도 변경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주유비, 비품비, 다과비 등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A

확인서 징구는 공직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는 절차이나, 공공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소액 수의계약을 빈번하게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확인서 징구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법상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③ 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나라장터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관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예를 들어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단서에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로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사는 해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해외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주지 않는 경우 강제로 징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확인서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확인서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약식 문서나 메일 등을 통해서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은 해외업체와 수의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영어 및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70, 271쪽)

Q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요?

A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Q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사업부서에서 강사 또는 평가위원을 섭외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계약부서가 있는 기관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아도 되나,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공단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단과 한국 언론진흥재단 간의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요? 수의계약이라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를 하여야 하나요?

A

공공기관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한국언론재단에 광고 위탁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광고위탁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매체사를 지정하여 한국언론재단에 광고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해당 매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 담당자는 해당 매체사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불만이 제기되곤 합니다. ○○공사에서는 청렴계약서약서 등 기존의 계약 관련 서식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시켜 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별도의 서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 지시·유도·묵인

Q

○○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A가 의장B에게 의회 행사 계획과 함께 화환 구입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의장B는 자신의 아들이 화원을 하고 있음을 알렸고 공무원 A는 의장 아들의 화원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화환을 구입했다면, A와 B중 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

○○구의회 의장B는 ○○구의회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화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도록 하였으므로 동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A는 해당 화원을 의장B의 아들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구의회가 그 화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A 역시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인 A의 배우자B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배우자B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무기계약직A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가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이 A의 배우자B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A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소속 공공기관은 해당 계약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A의 배우자B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공기관이 B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 산하기관인 △△재단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사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단의 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12조를 위반하였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혹은 내부징계시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공공기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해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단 공직자가 △△재단을 감사하는 시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에서 감경사유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 공공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Q

○○시는 ○○시의회 의원의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업무추진비를 결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A는 그 식당이 ○○시의회 의원의 자녀가 운영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공무원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A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음식물 등을 결제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시 소속 공무원A가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였으나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임을 몰랐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2항의 지시·유도 또는 묵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2 ▶ 적용제외

-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예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기준에 전용차량 배정 대상이 전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기준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보유 시설을 임직원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등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용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참고조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 위반 시 제재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해석사례

1.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출퇴근 시마다 사용하는 등 개인용 차량과 같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배정된 승용(전용)차량에 대해 출퇴근 등 공무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행정안전부, 202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
 - 공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공직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에 다녀오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근무지 근처에 식당이 없는 경우는 어떤지요?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의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 사용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이며, 근처에 식당이 없다는 사정이나 운행일지를 작성하는지 여부는 사적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법령·기준에 소속 공직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동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복귀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끊겼습니다. 당일은 공용차량으로 퇴근한 후 다음날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장 복귀 후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하고 귀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은 공용차량을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출장 후 귀가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Q

○○공사는 개도국 및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지침으로 해외사무소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규정하여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

○○공사에서 공용차량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해당 지침에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단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Q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다른 공직자의 결혼식이나 부친상 등의 경조사에 방문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소수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한 공무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경조사에 방문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10쪽) 및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65쪽)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명(지방 공무원은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Q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기 불편한 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임차한 차량을 가까운 대중교통 거점에서 교육시설까지 수시로 왕복하도록 하여 교육담당 인력(직원, 통역원, 교육강사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저촉되는지요? 이런 경우의 공용차량 사용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진흥원의 임차 차량을 직원들의 교육시설 접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흥원의 공용차량 운영 관련 규정에 임차한 차량을 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용차량 사용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회상규의 판단

참고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

기관장 A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직원 B, C와 함께 점심시간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한 경우, 공직자 A, B, C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인가요?

A

기관장 A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직원 B, C와 함께 점심시간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이 기관 공식적인 행사로서 해당 관용차량 사용 관련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자 A, B, C의 점심시간 관용차량 사용이 기관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 관용차량 사용 관련 절차·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도의회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인 용도의 사용은 관용차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의사의 운영 또는 안건 등에 대해 발언·표결할 권한과 주민의 청원을 소개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활동인 경우, 이를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기타 공공기관의 물품, 시설 등의 사적 사용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사적 사용에 해당하나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전화기, 팩스기,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인가요?



전자문서시스템, 팩스 및 전화기 등은 공공기관 물품 등에 해당하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사용의 경우 위반을 다투거나 제재할 실효성이 적으나 과다하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은 도심권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에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이 없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합숙시설을 사용하도록 시설 운영 규정에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일까요?



소속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합숙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공직자A가 ○○시에 재직중인 공직자B로 하여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 A와 공직자B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인지요?

A

공직자A는 제3자로 하여금 ○○시시설관리공단의 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고, 공직자B는 ○○시시설관리공단의 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두 공직자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A와 공직자B는 각 소속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인하여 공직자B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이익도 환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Q

공직자에게 지급된 제복, 신발 등 보급품을 공직자 개인이 재판매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나요?

A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공직자에게 제공한 제복, 신발 등 보급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해당 보급품의 지급·대여·반납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통해 발생한 재산상 이익도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국공립학교 교사A는 사용하지 않는 학교 프린터 토너를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하고, 개인소유의 프린터를 교무실에 비치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 문서 출력을 이유로 학교 예산으로 프린터 잉크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서고, 교무실, 주차장 등에 개인의 중고거래 물품을 보관하거나 물품을 촬영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물품 운반을 위해 학교 끌차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A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교사A가 학교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으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판매수익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교사A가 개인 프린터의 토너를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여 업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업무 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속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교사A가 학교 건물, 시설,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개인적인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학교 건물의 공간이나 부지, 끌차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상 이익은 환수당하게 됩니다.

Q

○○공사는 최근 신청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쓰던 집기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소속 임직원 다수가 폐기처분이 예정된 집기를 수거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

○○공사가 소유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공사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기 처분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있는 경우 공적 자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기존의 집기를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센터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기관으로 집합교육을 위한 숙소시설과 직원숙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직원이 자신의 숙소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숙소시설 내 별도 공실(행사 등 목적으로 만든 여분의 숙소)을 직원 또는 가족 및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업무상 출장 온 외부인에게 숙소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센터 소속 공직자가 센터의 직원숙소 및 공실을 개인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출장 온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Q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해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하거나 차량 정비소와 세차장 등을 사용하여 본인, 가족, 외부인의 차량을 정비 및 세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의 전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충전하는 행위, 정비소 및 세차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 모두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Q

도급사인 공공기관에서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 폭염·열사병 대비 쿨도시 등을 지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물품 및 보건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 홍보실 소속 공직자A가 개인 유튜브 콘텐츠로 취미, 자기개발 등 사적인 내용을 제작하면서 ○○부처의 스튜디오, 카메라, 마이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사적인 내용이 아닌 ○○부처의 홍보 부서와 협의하에 정책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소속기관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공직자가 소속기관 시설·물품 등을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홍보 등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담당자가 운영시간이 아닌 공휴일에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무료로 수영장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인 수영강습을 위해 무료로 수영장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주민 복지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체육센터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직원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에 공공기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가요?

A

기준 없이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기관 지침 등으로 사용 요건·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이하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2 ▶ 제한행위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자

- 공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해석사례

Q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소속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직무상 비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위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얻는다면 징계 및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공직자의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시의회 의원A는 ○○시가 주택지구 개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해당 개발계획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A는 이 개발계획을 건설업 대표인 배우자B에게 알려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하였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의원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A

의원A는 부동산 개발정보가 아직 공개되기 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알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부터 부동산 개발계획이 직무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배우자B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배우자B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Q

○○시의회 의원A는 지역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의원이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광고비 지출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A가 취득한 ○○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광고비 지출과 관련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시 공무원A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데, 마침 공무원A가 ○○시에서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한 사업 수행 등 관련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상 알게 된 자료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지위에서 조합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A

공무원A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조합의 비리 등을 알게 되었고,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당 조합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A가 위촉되었습니다. 위원A가 ○○자문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저촉되나요?

A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A가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위원A가 해당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된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 용역 수행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된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조사기관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공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A는 역세권개발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통해 ○○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공직자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A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져 개발 정보가 미공개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A는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Q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A는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기업B와 관련된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사A가 비상임위원 임기 종료 후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요?

A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 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같은 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준용됩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위원회의 비상 임위원이 기업B를 변호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 위원회의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Q

공무원A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에 해당할까요?

A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미공개정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 기관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은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A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등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매에 참가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A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B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당 지역 지가가 하락해 공직자A와 배우자B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적이익을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응시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나요?

A

○○부에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응시자 명단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의 감사업무 담당자가 해당 응시자 명단을 이용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타 응시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V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PART

IV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돋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 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법 위반행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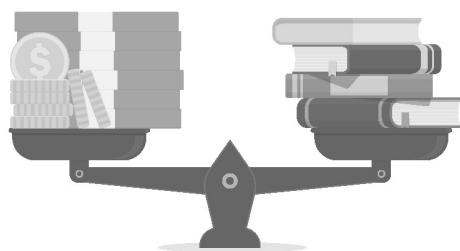
- ◉ (신고 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와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할 수 있음
- ◉ (신고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2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 (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함
- ◉ (과태료)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과태료 〉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3천만원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1천만원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 (별칙) 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은 징역과 벌금형의 대상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벌칙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공직자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획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 사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해서는 아니 됨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책임 감면) 자진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4 ▶ 신고자 보상

- (포상금)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 (보상금)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해석사례

Q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신고사건과 관련된 1차 조사를 하고 및 자료수집을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 및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이첩하여 국민권익위가 조사 및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피신고자인 소속 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Q

공공기관이 내부감사 중에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했고, 해당 공직자가 이를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등 소속기관 장의 명에 따른 경우에도 징계를 해야 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여 위반자가 그에 따랐다는 점은 징계양정 및 과태료 결정에서 고려할 사안일 수는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 또는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지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요?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신고의 순서가 있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事實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공직자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징계절차 회부와 과태료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하지 않고 단순 주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통보는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징계절차를 통해 주의·경고 등에 그치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과태료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등을 마친 경우 즉시 관할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하고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하여야 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동조항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공직자였던 자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재직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다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Q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관할법원 통보를 꼭 하여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위반에 대해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선정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소속기관장은 누구인가요?

A

해당 심사위원이 공직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위반事實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할 것이고, 해당 심사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공공기관의 장이 위반事實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20조제3항)하고 있는데, 해당 감경이나 면제를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징계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A

기관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 징계요구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징계대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을 한 사정을 함께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진 신고의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A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단, 처분 정도의 감경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권익위 변호사 자문단을 통해 대리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할 수 있나요?

A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부 타 법령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비실명(익명) 대리신고가 불가합니다.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V



기타

PART
V

기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공직자신고·신청의 접수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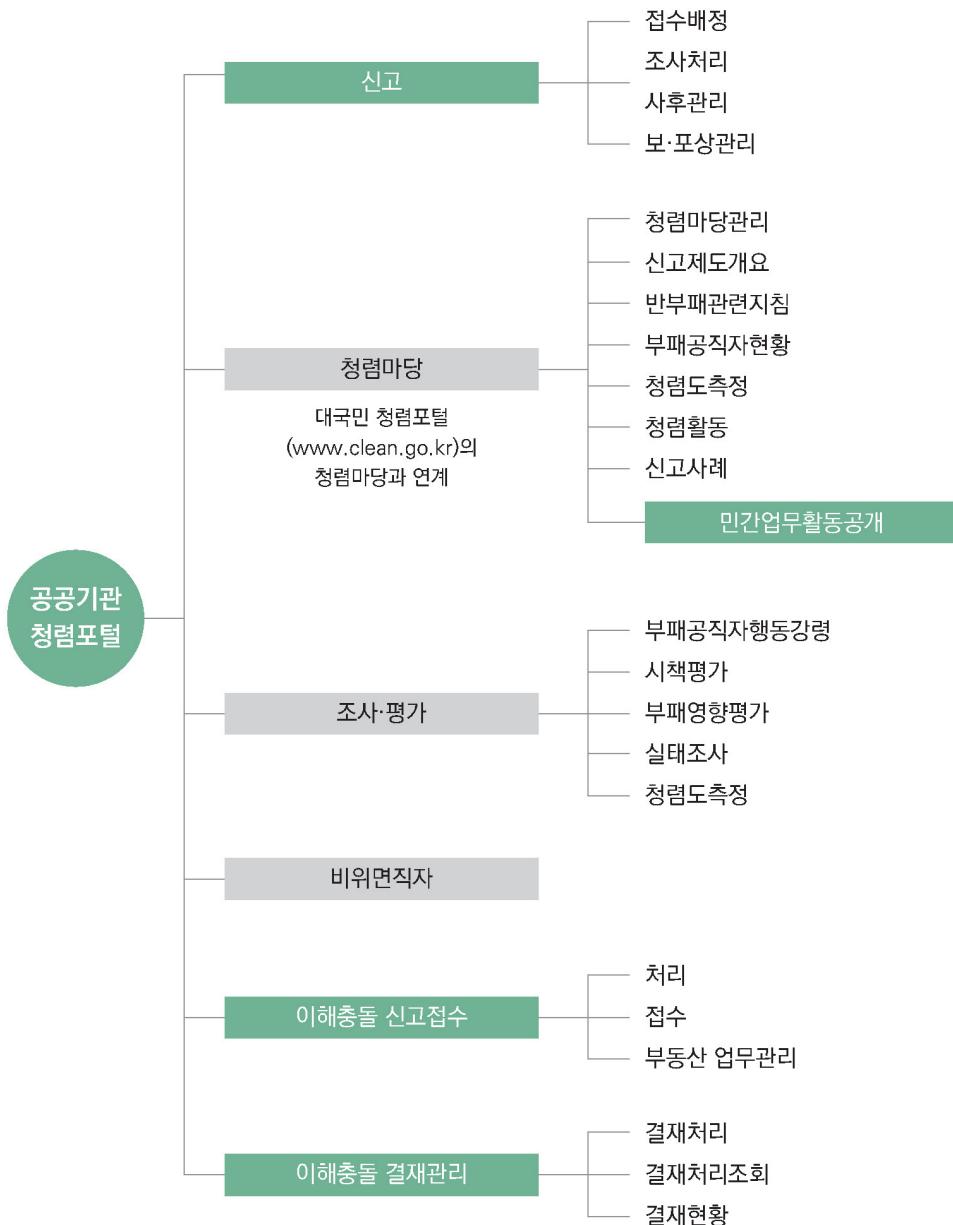
2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공공기관마다 제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제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의 운영지침을 해당 소속기관(하부기관)에 적용 가능

3 ◀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

-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공공기관의 청렴포털의 기능





Q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기관 외부 인사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A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부패방지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패방지교육과 별도로 교육을 해야 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부패방지교육에 포함됩니다. 매년 각 공공기관에서 부패방지교육을 수립할 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하면 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Q

○○시 시장A는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의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시장A가 ○○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받았는데, ○○공단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해야 하므로 이사장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공단에서는 재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요?

A

비상임이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 의해 임직원에 포함된다면 연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장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비상근 임원 등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연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이해충돌방지교육을 꼭 기관 자체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A

기관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세워 계획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부패방지교육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교육 지침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재단이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운영지침은 어떤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나요? 제정에 참고할 자료가 있을까요?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하위규정으로 사적이해관계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위규정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는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단순히 내부 업무 참고용 지침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또는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등의 규범력이 있는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검색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운영지침의 별표1에서 운영지침 표준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면 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Q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징계양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징계양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 자체 징계기준 마련 시 참조하도록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3에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참조해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 기타사항 및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을 반영

징계양정기준은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포함할 수 있고, 기관 취업규칙 등 기존의 기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징계양정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지침 별표를 참조하되 그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V

기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Q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할 때에도 명칭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라는 표현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운영지침을 제정할 경우 그 명칭은 ‘(기관명)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운영지침 표준안에는 행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행위기준을 운영지침에 추가하여도 되는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상이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우리 공공기관은 소속기관이 많습니다. 소속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하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따라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각각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상위기관에서 제정한 운영지침을 소속기관(하부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의 경우 원칙은 각급 국립·공립 학교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하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운영지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각급 국립·공립 학교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소속기관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신고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고 있다면 표준신고시스템 내에서 '타기관 이송' 처리를 하면 되고,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렴포털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에서는 종결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송 후 이송일자, 사유 등 이송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V

기
타



공공기관은 신고·제출의 관리나 위반행위 신고처리를 위해 청렴포털의 표준신고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요?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사용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고를 접수·처리할 경우 시스템에 준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기관별로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청렴포털에서 취합하는 정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정리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 회피 · 기피 · 조치 · 점검 · 통보 · 고발 · 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 · 관리해야 한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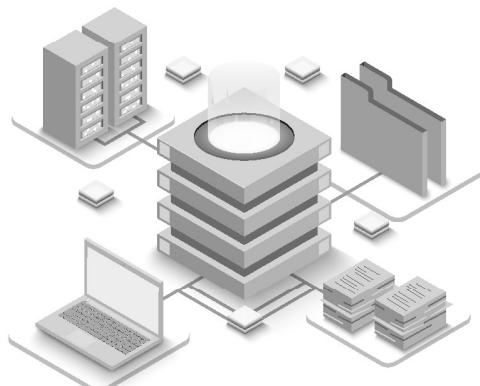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의무신고를 처리할 때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는 것과 별도로 전자문서 결재도 받아야 하는지요?

A

공공기관 청렴포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포털 내에서 완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포털 내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 새울, 자체 인트라넷 등)으로 중복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V

기
타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VI



부록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 경찰청장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둑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뭉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

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리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돋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事實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

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 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몫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 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둑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둑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 4.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 3. 기피 신청 사유
 - 4. 그 밖에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나 개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증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2. 18., 제정.]
 [시행 2022. 8. 5.]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8. 5., 타법개정.]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 관 명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66호, 2022. 2. 18., 제정.]

[시행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77호, 2022. 5. 10.,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겹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

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폐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징계양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제2조제1항 관련)

(기관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OO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OOO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OOO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OOO의 OO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OOO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시)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예시) OOO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OOO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OOO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OOO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OOO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OOO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 OOO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OOO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OOO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OOO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OOO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OOO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OOO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OOO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OOO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OOO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OOO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OOO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OOO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① OOO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OOO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 ① OOO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OOO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OOO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OOO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폐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OOO의 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OOO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OOO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OO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홈페이지 | www.acrc.go.kr
